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2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이재정・임호선・강준현

안태준 • 백혜련 • 정태호

김현정 · 강경숙 · 이병진

민병덕 · 오세희 · 김병기

민홍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136명 중 타의로 마약을 시작한 경우가 17명(12.5%)이며, 이 중 누군가가 피로회복제·숙취해소제 등이라며 마약류를 권유한 경우가 9명(6.6%), 먹고있던 술·커피 등에 몰래 마약류를 넣은 경우가 8건(5.9%)에 달함. 한편, 스스로 마약을 시작했으나 약물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관계 단절이나 관계 갈등을 피하기 위해억지로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32명(35.2%)에 달해, 여성이 원치않는 마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 하고 있으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 하거나 추행하는 것과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임.

또한, 위와 같은 경위로 마약류를 사용하게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제8 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마약에 의한 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마약류를 이용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 제6조"를 각각 "제4조, 제4조의2, 제6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4조, 제5조"를 "제4조, 제4조의2, 제5조"로, "제4조 또는 제5조"를 "제4조, 제4조의2 또는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2(마약에 의한 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 마약류를 이용해 「형
<u>법</u> 행) 제1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 제8조 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 6조 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 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 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 ②	벌한다. (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4조, 제4조의2, 제 제4조, 제4조의2, 제6 또는

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	
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